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18.

기획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 안 건 명: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 발 의 자: 달서구청장(세무과장)
- 발의일자: 2025. 9. 3.(수)
- 회부일자: 2025. 9. 3.(수)
- 상정 및 의결: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2025. 9. 18.)

2. 재정이유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5,361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10,000을 출연
- ※ 연구원 혁신방안 후속 조치로 법정 출연비율 인하(1만분의 1.2 → 1만분의 1), 관련 법령 '25년 말 개정 예정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 「지방재정법」 제18조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와 지방세입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구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 지방세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지방자치단체 세정운영 협력 지원, 지방세 생송사무 지원 등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우리 구에서 2026년도에 부담해야 할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산출되며, 전전년도(2023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1,536억 1,454억 1천원)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1,536만 1천 원임. (2025년도 1,798만 6천 원)
 -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조직 혁신방안 발표에 따라 출연비율 인하(1.2→1.0), 하반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예정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근거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정부의 감면 확대 정책 등으로 지방세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집행부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